

제286회 정례회  
성 북 구 의 회

의안  
번호 제410호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검토보고서**



**행정기획위원회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  
전문위원 이 병 곤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410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11. 10.
- 회 부 일 : 2021. 11. 17.

## 2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”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,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인수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
- 제1조(목적)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제10항<sup>1)</sup>에 따른 사항
- 제2조(정의) : “당선인”과 “구청장직”에 대한 용어

나.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과 예우 (안 제3조~제4조)

---

1) 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. 비서실장 등 지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라.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<sup>2)</sup> (안 제6조)

마.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(안 제7조)

1. 구의 조직·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
2.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
3.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
4.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·발간
5.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

바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제17조)

사. 위원회의 활동보고서 등 공개<sup>3)</sup>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)

다. 재·보궐 선거 등으로 당선된 경우 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1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, 107조

**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**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(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당선인”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  
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인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 
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
- 2) 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- 3)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(白書)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

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·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

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시·도: 20명 이내
2. 시·군 및 자치구: 15명 이내

⑥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,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⑦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07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선출한다.

## ○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

**제19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.

나. 예산조치 : 예산팀과 협의

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1. 9. 30. ~ 2021. 10. 20. (20일간)
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| 구분             | 권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<br>여부 | 미반영사유(개선안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패<br>영향<br>평가 | 회의록 작성 및 보관<br>에 관한 규정이 없어<br>공정성과 책임성이 저하<br>될 수 있으므로 해당<br>내용을 추가하여 이해<br>충돌의 가능성을 배제<br>하고 투명하게 위원회<br>가 운영될 수 있도록<br>하여야 함. | 반영       | -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<br>· 제3항 :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출<br>석위원, 심의안건, 발언내용<br>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<br>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<br>· 제4항 :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<br>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br>회의진행과 회의록을 비공<br>개로 할 수 있다. |

## 5. 검토의견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  
체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”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  
도화됨에 따라,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  
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향후,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도록  
하여 그 동안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던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법의 테  
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